大韓地籍公社와 공동으로 「筆地中心土地情報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지적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臺帳情報와 圖形情報를 統合하고 그 위에 多様한 토지관련정보인 건축물, 도시계획, 시설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한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의 개발목적은 첫째, 다양한 토지관련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부나 국민에게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정보화의 기반을 확보하며, 셋째, 지적정보 및 각종 시설물 등의 부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개인소유권 보호와 각종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넷째, 기존의 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구현과 더불어 행정처리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정보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지적업무가 세정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번에 개발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지방세정에 접목시켜 세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세정분야에 있어서 지적의 역할

지적은 고대국가가 탄생하면서 토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국가 시기에 토지세 징수를 위한 지적조사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사방법과 토지측량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된 1910년대에 시작되었다. 1924년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시군구에 지적공부가 이관되고 지적사무는 지방행정기관에 까지 확대되었다. 그후 지적업무는 1934년 세무서가 설치되면서 세무서로 이관되어 운영되었으며, 1961년 농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부터 지적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이와같이 지적업무는 세정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지적과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에 이르러 토지는 다른 일반 재화와 달리 토지가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